

『2022년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 정기 출자사업 계획(수산투자 계정)』 공고

2022년도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 정기 출자사업(수산투자 계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25.

1. 사업추진 목적

- 농림수산물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농림수산물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

2. 출자분야 및 대상

□ 출자분야 및 결성규모

구분	투자분야	개수	모태최대출자비율	최소 결성규모(억원)			
				모태펀드	민간출자	결성총액	
수산	일반	수산일반	1	70%	70	30 이상	100 이상
	특수목적	수산벤처창업	1	80%	60	15 이상	75 이상
계			2	-	130	45 이상	175 이상

□ 출자대상

-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을 구성할 수 있음

3. 주요 출자조건

□ 일반분야

항 목	내 용
주목적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식품경영체 중 수산업, 수산물식품분야 사업을 영위(려)는 경영체 또는 수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원양산업자 및 수산 관련 R&D에 종사하는 자(이하 수산경영체) *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사업에는 투자금지
출자비율	조합약정총액의 70%이하
존속기간	8년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이상 10년 이내, 2년이내 연장 가능
투자기간	존속기간의 1/2(최대 5년) (존속기간 및 투자기간은 투자관리전문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조합 결성시한	선정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2개월 이내에서 유예 가능)
자펀드의 의무투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등록 후 3년이 지난 그 다음날까지 출자금 중에서 100분의 60 이상의 금액을 수산분야 수산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
연차별 의무투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등록 후 출자약정액 대비 2년 이내 40%, 3년 이내 60%, 4년 이내 80% 의무투자
의무투자비율에 대한 우선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용근로자수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수산경영체에 투자(우선투자)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출자약정총액의 1% 이상
우선손실충당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모태펀드 출자분의 10%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할 수 있음(운용사 제안)
선정우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기준 직전 5년 이내 수산분야 투자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 어업경영체에 전문적으로 투자(100%)하는 경우(규약 확약) • 수산모태펀드 출자 예정금액을 포함하여 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출자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신주보통주에 출자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 계획 시(규약 확약) • 정부·공공기관이 인증·확인한 수산분야 벤처, 신기술 등에 대한 투자이력(20억원 이상) 또는 계획(출자약정총액의 10% 이상, 규약 확약) 인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서류평가 시 최대 10점 이내에서 가점 추가 부여
대표펀드매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펀드매니저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신청조합 약정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2인 이상)의 참여인력으로 구성하고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조합을 포함하여 4개 이하이고, 약정액의 합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참여인력 개인별 관여 금액(관여 펀드의 약정총액 / 참여인력 수)의 합은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합을 포함하며, 투자자의무비율을 달성한 조합(펀드)은 제외함 * 참여인력과 관리인력은 겸직할 수 없음
출자금 납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

항 목	내 용
관리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 출자약정액 × 적용요율 • 조합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산하는 날까지의 기간 : 투자 잔액(분기말 잔액) ×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 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 2.5% 이하 · 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2.3% 이하 · 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 2.1% 이하
성과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수익률 : IRR 3% 이상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수산분야, 유망청년창업 분야, 고용창출 분야, 여성기업 투자금액의 합이 결성금액의 40% 이상일 경우,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 중 GP(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를 제외하고, 수산모태펀드에 배당될 배당분의 20% 이내에서 그 해당 금액을 업무집행조합원에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 ① (비대면 수산분야)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수산분야 원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달을 비대면화하여 경영효율화 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사업(물류, 유통 포함 등)을 영위하는 수산경영체 ② (유망청년창업 분야) 창업 3년 이내로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39세 이하 임직원이 50% 이상인 수산경영체 ③ (고용창출 분야) 투자시점부터 회수시점 까지 투자금 누계액 1억원 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 한 경우 ④ (여성기업) ㉔여성이 최대주주인 경우, ㉕여성인 당해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등기되어 있는 경우, ㉖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전체 투자금액 대비 신주 보통주투자 금액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시, 수산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지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times \text{Max}[(10\% \times \frac{\text{신주보통주 투자비율} - 40\%}{60\%}), 0]$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지급 분은 청산 시 수산모태펀드 분배금에서 총당하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 이내에서 GP(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함
수탁기관	• 수산모태펀드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을 통해 조합자산 운용
회계감사인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지정한 회계감사인 POOL에서 선정
ERP	• ERP 사용 의무
기타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투자관리전문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

□ 특수목적분야(수산벤처펀드)

항 목	내 용
주목적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경영체 중 수산업, 수산식품분야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영체 또는 수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원양산업자 및 수산 관련 R&D에 종사하는 자(이하 수산경영체)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산경영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 준비단계 또는 사업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② 정부·공공기관이 인증·확인한 수산분야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 ③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주관한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수산분야 창업 아이템을 활용하는 기업 ④ 수산 관련 공공·민간의 연구개발 성과 또는 정부·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신기술을 사업화·활용하는 기업 ⑤ 수산물·수산업과 관련된 ICT 등 융복합 기술을 사업화·활용하는 기업 ⑥ 수산분야 청년기업(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50% 이상이 만 39세 이하)
출자비율	조합약정총액의 80%이하
존속기간	8년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이상 10년 이내, 2년이내 연장 가능
투자기간	존속기간의 1/2 (최대 5년) (존속기간 및 투자기간은 투자관리전문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조합 결성시한	선정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2개월 이내에서 유예 가능)
자펀드의 의무투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약정액의 70%를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 • 조합등록 후 3년이 지난 그 다음날까지 출자금 중에서 100분의 60 이상의 금액을 수산분야 수산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
연차별 의무투자비율	• 조합등록 후 출자약정액 대비 2년 이내 40%, 3년 이내 60%, 4년 이내 80% 의무투자
의무투자비율에 대한 우선투자	• 의무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용근로자수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수산경영체에 투자(우선투자)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조합 출자약정총액의 1% 이상
우선손실충당비율	• 수산모태펀드 출자분의 10%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할 수 있음(운용사 제한)
선정우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기준 직전 5년 이내 수산분야 투자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 어업경영체에 전문적으로 투자(100%)하는 경우(규약 확약) • 수산모태펀드 출자 예정금액을 포함하여 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출자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신주보통주에 출자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 계획 시(규약 확약) • 정부·공공기관이 인증·확인한 수산분야 벤처, 신기술 등에 대한 투자이력 (20억원 이상) 또는 계획(10%이상, 규약 확약) 인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서류평가 시 최대 10점 이내에서 가점 추가 부여
대표펀드매니저	• 대표펀드매니저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신청조합 약정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2인 이상)의 참여인력으로 구성하고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조합을 포함하여 4개 이하이고, 약정액의 합이 5,000억원

항 목	내 용
	<p>미만이어야 하며, 참여인력 개인별 관여 금액(관여 펀드의 약정총액 / 참여인력 수)의 합은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합을 포함하며, 투자비의무율을 달성한 조합(펀드)은 제외함 * 참여인력과 관리인력은 검직할 수 없음
출자금 납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
관리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기간: 출자약정액 × 적용요율 • 조합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산하는 날까지의 기간 : 투자 잔액(분기말 잔액) ×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 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 2.5% 이하 · 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2.3% 이하 · 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 2.1% 이하
성과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수익률 : IRR 0% 이상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수산분야, 유망청년창업 분야, 고용창출 분야, 여성기업 투자금액의 합이 결성금액의 40% 이상일 경우,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 중 GP(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를 제외하고, 수산모태펀드에 배당될 배당분의 20% 이내에서 그 해당 금액을 업무집행조합원에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 ① (비대면 수산분야)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수산분야 원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달을 비대면화하여 경영효율화 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사업(물류, 유통 포함 등)을 영위하는 수산경영체 ② (유망청년창업 분야) 창업 3년 이내로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39세 이하 임직원이 50% 이상인 수산경영체 ③ (고용창출 분야) 투자시점부터 회수시점 까지 투자금 누계액 1억원 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 한 경우 ④ (여성기업) ㉠여성이 최대주주이거나, ㉡여성이 당해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거나,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전체 투자금액 대비 신주 보통주투자 금액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시, 수산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지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times \text{Max}[(10\% \times \frac{\text{신주보통주 투자비율} - 40\%}{60\%}), 0]$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지급 분은 청산 시 수산모태펀드 분배금에서 총당하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 이내에서 GP(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함
수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모태펀드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을 통해 조합자산 운용
회계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지정한 회계감사인 POOL에서 선정
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P 사용 의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투자관리전문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

4. 자펀드 선정기준

□ 자펀드 선정기준

- 회사현황, 투자조합 운용능력 및 운용실적, 조합결성 및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전문성과 투자전략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합 결성 가능성 및 운용의 안정성을 중시

구 분	평 가 내 용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의 재무적 안정성 ○ 대표이사의 경영능력 ○ 업무집행조합원의 재무적 안정성 등
운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조합의 운용 경험 ○ 투자조합 운용 규모 ○ 청산 및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성과
조합결성 및 운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재원 조달 가능성 ○ 투자대상 발굴 및 결정시스템 ○ 투자방법 구성의 적정성 ○ 투자자금 회수전략의 차별성, 현실성 ○ 투자심사인력 관리상황의 적절성 ○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제안 ○ 투자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 등
투자조합 운용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책임자의 능력 ○ 투자능력 제고 전략 ○ 투자심사인력의 투자실적 ○ 농식품산업에 대한 이해 및 접근전략 등

□ 선정 우대조건

- 세부 선정우대 조건은 상기 「3. 주요 출자조건」을 참고

□ 선정 배제조건

- 일정 횟수 이상의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인 업무집행조합원
- 과거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투자조합의 성실한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집행조합원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무집행조합원
-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업무집행조합원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집행조합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운용사에 대한 거래 제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퇴직 전 1년 이내에 투자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2급 이상 직원이 대표이사, 대표펀드매니저 및 운용인력으로 참여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운용사 선정에서 배제
- 「상법」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를 의미

5. 선정취소 및 제재사항

□ 선정취소 대상

- 업무집행조합원이 중대한 규약 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안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고의에 의한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된 경우
-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등 당해 자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재 사항

- 결성시한까지 조합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은 결성 시한일로부터 최고 3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제한
- 상기 선정취소 대상에 해당되어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은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제한
- 규약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조합 해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제한

6.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2차 심의(투자심의회위원회)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 자	내 용	비 고
2022. 3월 31일	제안서 접수 마감	당일 15:00시까지 접수
2022. 4월 말	최종 선정 및 결과발표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2022. 7월 말 이내	조합 결성 완료	최종 선정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지원방법 및 접수마감 시한

- 지원 방법 : 제안서 양식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 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제안서 제본 2부 및 증명서류 제본 1부)
- 접수 마감일 : 2022. 3. 31. (목) 15:00시까지
- 접수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투자지원센터 가온누리 인베지움)
 - 072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층
 - (전화) 02-3775-6771, 6774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수산물모태펀드 출자사업과 관련하여 외부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외부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운용사에 선정 배제·취소 등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 2. 25.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 제출 서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1. 서류 구성

- ※ **별첨1, 별첨6-1~3, 별첨7-1~2, 별첨8**은 첨부된 엑셀 파일의 각 워크시트에 작성
- 별첨1 출자신청서
 - 별첨2 서약서
 - 별첨3 확인서
 - 별첨4 출자확약서[**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확약서 제출 필수**]
 - 별첨5 투자조합결성제안서
 - 별첨6-1 투자조합현황 총괄
 - 별첨6-2 운용중 조합 현황
 - 별첨6-3 청산완료조합 현황
 - 별첨7-1 인적자원 관련(별첨5의 II.3 관련 세부 내용임.)
 - 별첨7-2 운용인력 실적(별첨5의 II.3 관련 세부 내용임.)
 - 별첨8 회사의 주주명부 및 조합 출자자명부
 - 별첨9 제안서 PT 자료
 - 별첨10 회사, 회사의 대주주(법인인 경우) 및 조합의 최근 3년간(제안서 제출일 기준)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자료 각 1부(연결기준 아닌 개별 재무제표 제출)
 - 별첨11 2019. 1. 1. 이후 청산완료 조합의 **청산보고서(청산 IRR 기재된 서류)** 각 1부
 - 별첨12 현재 운용중인(해산하였으나 미청산상태의 조합포함) 투자조합규약 각 1부
 - 별첨1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첨14 주요 출자 조건 신청서
 - 별첨15 제안서 상 선정 우대사항 내역

2. 제출 방법 (①부터 ③까지 순서대로 제출)

- ① 확인서류(제본 1부) : 제본시 아래 순서대로 **목차** 포함하여 제본할 것(각 서류별 색지 삽입하여 구분 표시)
- 제출 서류 - 별첨 1, 2, 3, 4, 13, 14, 15 (원본)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등록 서류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대표이사 및 참여인력의 ①경력 확인서(성명, 근속기간, 근무 부서, 직책 등 기재)와 ②개인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①, ② 모두 제출)**
 - 4대보험 사업장(제안 운용사) 가입자 명부
 - 별첨 12 (원본 대조필): 가급적 제본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별첨 10, 11과 함께 별도 제출
- ② 제안서(제본 2부) : 제본시 아래 순서대로 나열하여 제본할 것
- 제출 서류 - 별첨 1, 2, 3, 4, 5, 6-1~3, 7-1~2, 8, 9
 - ※ 별첨 9(제안서 PT자료)는 PowerPoint 총 20 페이지 이내로 작성(제안서 제출시 1회 한정 접수하며, PT발표 시 내용 변경 불가)
- ③ USB 메모리 1개
- 포함 내용 : 별첨 1~9, 14, 15 서류

【별첨2】

서 약 서

당사는 「농림수산물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22년 농림수산물투자조합 출자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 자료를 202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며,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부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대표펀드매니저의 변경, 주요출자자의 변경 등과 같이 본 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선정절차와 관련한 심의 중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자료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자료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 선정취소 및 향후 출자 사업에의 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무집행조합원 : (인감)
 대표이사 : (인)
 대표펀드매니저 : (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귀하

【별첨3】

확 인 서

법률 준수여부(2019년1월1일 이후)	확인 ¹⁾ (유,무로 표시)
1. 최대주주, 실질적 경영지배권을 가진 주주, 대표이사, 회사, 대표펀드매니저의 기소, 재판계류, 선고 및 형 확정으로부터 3년 미경과 사실이 있을 때	
2. 대표이사, 회사, 대표펀드매니저가 회사 및 조합과 관련된 민사 소송의 피소상태이거나 피소 후 패소하여 사유가 미해소인 경우	
3. 업무집행조합원 임직원 ²⁾ 의 결격사유 여부(관련법 ³⁾ 제13조)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⁴⁾ 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제3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농식품투자조합의 취소 당시 임직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정조치 ⁵⁾ 내역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 중소기업부·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제재여부	

- 1)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제출
- 2) 임직원이란 대표이사, 대표펀드매니저,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 3) 관련법이란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동일)
- 4) 법령이란 관련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금융관련법률
- 5) 행정조치라 함은 시정명령, 경고 등 해당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모든 제재사항을 의미

당사는 위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향후 출자 사업에의 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무집행조합원 : (인감)

대표이사 : (인)

대표펀드매니저 : (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 귀하

【별첨4】

출자확약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귀중

당사는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의 2022년 출자사업에 조합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출자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조 합 명 :
2. 업무집행조합원 :
3. 출자금액 :
4. 출자시기 :
5. 관할부서 및 담당자연락처 :

20 년 월 일

출자자(법인/개인)

(인)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제안서

20 . .

※ 주의사항

1. 상세 목차 및 페이지 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누락 시 감점 예정.
2. 제안서 및 PT자료는 제출 후 변경 불가하므로, 작성 시 착오 없기 바람.
3. 의도적으로 근거자료 미제출 또는 누락·오기 시에는 선정 배제 요건에 해당됨.
4.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누락 없이 제본하여 제출할 것.

△ △ 투자(주)

I. 운용기관(회사)의 개요

1. 일반현황

□ 회사의 연혁

일 시	내 역

□ 주주현황 및 특수관계인

(단위:주,백만원,%)

주 주 명	출자금액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1대 주주와의관계 ○○○의 특수관계인
계				

※ 대주주인 모기업의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1 SET 첨부

□ 임직원의 법률 위반 여부

성 명	직책	등기일자	법률위반여부	비 고
				위반내용을 기재

※ 상임/비상임 임직원 및 등기/비등기 임원 전원에 대한 금융관련법령 위반 여부 기재

□ 대주주 약력 및 요약 재무현황(최근 3년간): 관련 자료 제출

※ 최근 5년간(2017.1.1. 이후 현재까지) 대주주 변동사항 표시

□ 조직 구성

※ 회사 조직도 작성(임직원 성명 기재요)

□ 대표이사, 대표펀드매니저 및 임직원 상세 경력: 관련 자료 제출

성 명 (나이)	학력 (전공)	경력	근속기간 (제출일 현재)	담당 직위	주요 업무 내용	대표펀드 매니저 경력	전문인력 여부	비고
	O대학 O과 (졸업)	OO창투	O년O개월					
		OO전자	O년O개월					
		현직장	O년O개월					

※ VC 등 투자경력과 산업계경력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할 것.

※ 비고란에 등기임원 재임기간 및 상근 여부(상근,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구분)

표시할 것.(임직원 경력 확인서 및 근무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대표펀드매니저 변동 상황(2019.1.1. 이후 현재까지): 관련 자료 제출

투자조합명	조합운용기간	대표펀드매니저		비고
		성명	재임기간	
			00년00월00일 ~ 00년00월00일	

□ 법률 위반 사항(2019.1.1. 이후)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위반사유
최대주주, 실질적 경영지배권을 가진 주주, 대표이사, 회사, 임원, 대표펀드매니저의 기소, 재판계류, 선고 및 형 확정으로부터 3년 미경과 사실이 있을 때				
대표이사, 회사, 임원, 대표펀드매니저가 회사 및 조합과 관련된 민사 소송의 피소상태이거나 피소 후 패소하여 사유가 미해소인 경우				
업무집행조합원 임직원의 결격사유 여부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정조치 내역				
합 계				

※ 위반사유 상세내용은 관련자료 제출 및 별지 기재 요망.

2. 재무상태

□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I. 자산총계			
1. 유동자산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기타			
2. 장영투자자산			
투자주식			
투자사채			
약정투자			
창업자대여금			
기타			
3. 고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이연자산			
II. 부채총계			
1. 유동부채			
2. 고정부채			
III. 자본총계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이익잉여금			
4. 자본조정			
부채와 자본총계			

□ 요약 손익계산서(예시)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1. 영업수익			
투자수익			
미투자자산 운용수익			
2. 영업비용			
투자 및 금융비용			
일반관리비			
3. 영업이익			
4. 영업외수익			
5. 영업외비용			
6. 경상이익			
7. 법인세 등			
8. 당기순이익			

□ 요약 현금흐름표(예시)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당기순이익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 현금의 증가(감소)			
5. 기초현금			
6. 기말현금			

□ 최근 3년간 재무상태

(단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 평균
1. 안정성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고정장기적합율				
자본충실도				
2. 수익성				
영업수익순수익율				
총자본경상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자기자본경상이익율				
총자산수익율				
3. 유동성				
총자본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4. 성장성				
영업수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경상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 자본충실도는 자본총계/자본금으로 산출함.

※ 총자산수익율은 당기순이익/[(기초자산총계+기말자산총계)/2]으로 산출함.

3. 펀드운용 및 투자실적

<작성요령>

※ A4형 기준으로 작성

※ 작성대상 : 신청회사 운영 중인 본 계정 및 조합의 최근 3년간 자료(결산기 기준)

가. 자금조달

□ 총 운용재원의 구성

(단위: 백만원)

연도	총운용 자원 (A+B+C+D+E)	자본금 (A)	잉여금 (B)	차입금 (C)	투자조합 (D)	기타 (E)
2021						
2020						
2019						
계						

※ 작성요령

- 2019년~2021년(3년)의 자료로서 회계감사가 완료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자본금, 잉여금, 차입금, 기타는 신청회사 본계정의 최근년도 결산자료 근거로 작성
- 투자조합은 해당연도 신청회사가 결성한 결성총액 기재

□ 투자조합 결성실적 및 구성내역

(단위: 백만원)

조합명	결성시기	투자회사 출자금	정부 출자금	일반법인	기관투자자	연·기금	개인	해외자본	기타	결성총액
계										

※ 작성요령

- 투자조합 결성총액은 <가. 총운용재원의 구성>의 투자조합 결성총액과 일치하여야 함.
- 정부출자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출자금을 기재

□ 청산완료조합 현황(2019.1.1. 이후 청산조합)

(단위: 백만원)

조합명	결성 시기	청산 시기	조합구분	역정총액	납입총액	투자총액	충분배금	청산 IRR	투자 업체 수	기준 수익률 (규약)	성과보수 지급액
계											

※ 작성요령

- 조합구분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 충분배금액 : 원금 + 총이익(투자이익, 기타이익 등)
- 조합 성과 관련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보수 총 금액

=> 나. 투자실적의 '연도별 투자내역' 표를 참조하여 작성

□ 운용중 조합 현황

(단위: 백만원)

조합명	결성 시기	해산시기 (예정)	결성총액	GP 출자금	투자총액	조합가치			시장 성 있는 자산	미투 자잔 액
						보유현금	배당총액	투자자산		
계										

※ 투자자산 : IPO종목(예정포함), 장외거래가능종목은 현재시가, 그 외 장부가격으로 산정

※ 미투자잔액 : 결성총액에서 투자총액을 뺀 금액

=> 나. 투자실적의 '연도별 투자내역' 표를 참조하여 작성

나. 투자실적

□ 연도별 투자 내역(2019년, 2020년, 2021년으로 구분기재)

※ 2022년 투자 및 회수실적은 기재하지 않겠

(단위:백만원)

① 투자 재원	대표펀드 드매니저	담당자명	투자 기업명	② 업종	③ 주요 사업 분야	④ 투자 방식	⑤ 회수 방법	투자 일자	회수일자	⑥ 투자 금액	⑦ 회수 금액	⑧ 수익 금액	⑨ 수익율	⑩ IRR	비고
본계 정	해당 없음														
		소 계													
	해당 없음														
		소 계													
계															
투자 조합 1호															
	소 계														
투자 조합 2호															
	소 계														
계															
총 계															

※ 작성요령: 한 페이지 이상일 경우 항목표시줄을 반드시 포함할 것.

- 최근 3년간 신청회사 본계정 및 투자조합별로 구분 기재
-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름(해당코드는 투자내역표 아래에 표로 별도 구분표시할 것)
- 주요 사업분야는 투자기업의 핵심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재
- 투자방식은 ①신주(보통주 또는 우선주 표기), ②구주, ③전환사채, ④신주인수권부사채, ⑤프로젝트 파이낸싱 중 택일하여 번호 기재
- 회수방법은 ①거래소상장, ②코스닥등록, ③M&A(MBO, LBO 포함), ④Buy Back, ⑤제3자매각, ⑥청산(liquidation) 중 택일하여 번호 기재
- 투자금액은 결산기 단위로 신청회사 및 투자조합 감사보고서의 고정자산(창업투자자산) 수치와 일치하여야 함. 불일치할 경우 해당 사유 기재, 동일기업에 대해 추가투자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 투자란에 추가투자 시기를 기재하고 세부 투자금액 등 투자내역 및 성과는 해당 시기자료에 기재
- 회수금액은 전체 투자금액 중 회수 완료된 금액을 기재
- 수익금액은 회수금액에서 회수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을 기재, 결산기 단위로 신청회사 및 투자조합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투자수익) 수치와 일치하여야 함. 불일치할 경우 해당 사유 기재
- 수익률은 (수익금÷회수원금) × 100%
- IRR의 소계는 투자금액으로 가중평균한 값으로 표시

□ 최근 3개년 결성조합 투자실적

(단위:백만원)

결성연도	조합명	조합구분	주요투자 분야	조합출자약정액 (A)	누적투자금액 (B)	투자실적 (B/A)
2021년						
	소 계					
2020년						
	소 계					
2019년						
	소 계					
합 계						

※ 작성요령

- 조합구분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 주요투자분야 : IT, BT, 영상투자분야 등으로 구분

□ 미투자자산 운용내역

(단위: 백만원)

운용재원	총운용재원	창업투자 자산	미투자자산						기타	계
			장단기 금융상품	현금 및 현금등가물	유가증권	투자 유가증권	장단기 대여금			
투자회사										
투자조합1										
투자조합2										
계										

※ 작성요령

- 신청회사 본계정 및 투자조합별로 구분하여 기재, 감사보고서의 대차대조표 항목과 일치하여야 함.
- 유가증권 : 유동자산 항목(단기) / 투자유가증권 : 투자자산 항목(장기)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실적(2019.1.1 ~ 2021.12.31까지)

(단위: 백만원)

① 성명	투자기업명	② 업종	③ 주요사업분야	투자금액	④ 투자 방법	투자 시기	회수 시기	⑤ 회수원금	⑥ 수익금	⑦ 수익율	⑧ 회수 방법	투자당시 근무처
합 계												

※ 작성요령: 아래 참조

- 본 농식품투자조합에 참여할 심사역만 투자실적을 기재
-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름
- 주요 사업분야는 투자기업의 핵심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재

4. 투자방법은 ①신주(보통주 또는 우선주 표기), ②구주, ③전환사채, ④신주인수권부사채, ⑤프로젝트 파이낸싱 중 택일하여 번호 기재
5. 회수원금은 전체 투자금액 중 회수완료된 금액을 기재
6. 수익금은 투자회수금 중 회수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을 기재
7. 수익률은 (수익금÷회수원금) × 100%
8. 회수방법은 ①거래소상장, ②코스닥등록, ③M&A(MBO, LBO 포함), ④Buy Back, ⑤제3자매각, ⑥청산(liquidation) 중 택일하여 번호 기재

□ 現 투자심사역의 투자실적(2019.1.1 ~ 2021.12.31까지)

(단위: 백만원)

① 성명	투자기업명	② 업종	③ 주요사업분야	투자금액	④ 투자 방법	투자 시기	회수 시기	⑤ 회수원금	⑥ 수익금	⑦ 수익률	⑧ 회수 방법	투자당시 근무처
소 계												
소 계												
합 계												

※ 작성요령: 위와 같음.

다.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마케팅 지원 실적

- 제안회사가 투자한 농업관련기업에 대한 경영·마케팅 분야 지원실적(사례별로 기술)
- 농식품분야에 대한 투자실적 및 경험(사례별로 기술)

II. 자조합 결성 및 운용계획

1. 조합 결성계획

□ 결성규모

조합원명	농식품모태펀드	업무집행조합원	기타 일반조합원	계
출자금액				

□ 결성예정일 : 20

□ 기한내 결성을 위한 재원조달방안(구체적으로 기재)

구 분	재원조달 및 구성방안
업무집행조합원	
일반조합원	

- ※ 구체적인 자료 기재(출자자 모집방법, 구성, 재원규모 등)
- ※ 출자확약서 필히 제출

2. 조합 운영계획

가. 투자계획

□ 투자대상기업 발굴 및 투자결정시스템

- ※ 투자와 관련한 구성원과 세부 조직간의 직무분장, 투자대상기업 발굴절차, 투자기업 발굴 방법 및 심사·결정 절차도 등 투자기업 발굴 및 결정시스템 관련 전반적인 사항 기재

□ 세부분야별 분산투자계획

구 분	의무투자 (60%)			기타	계
	우선투자 (20%)				
투자분야					-
투자비율					100%

- ※ 농식품산업관련 기술분야별 기업분포현황과 투자회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분산 투자계획

□ 우선투자기업에 대한 후속지원계획

- ※ 경영컨설팅, 마케팅(국내외), 기술정보제공, 법률회계 등 분야별 후속 지원계획 기재

□ 기타 투자계획 관련 사항

나. 회수계획

□ 자금회수 일정 및 목표수익율

- 목표수익율 : 연 % (IRR)
- 자금회수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투자계획								
회 수 계 획	1차년도 회수비율							
	투자분 수익율							
	2차년도 회수비율							
	투자분 수익율							
	3차년도 회수비율							
	투자분 수익율							
	4차년도 회수비율							
	투자분 수익율							

□ 자금회수 방법

자금회수방법	회수비중(%)	세부방안

※ 국내 상장시장 및 KOSDAQ 활용, 선진국의 주식시장 및 해외펀드 활용, 각종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 매각, M&A 등 자금회수방법별 회수비중과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3. 투자조합 운용능력

가. 투자심사 인력 현황

□ 본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시 참여 운용인력

구 분	성 명 (나이)	직 위	업계 경력	최종학력 (학위)	전공	투자 기업수	주요 투자회사
대표펀드 매니저							
일반운용 인력							
관리인력							

□ 대표펀드매니저 및 일반운용인력 인적사항

성 명	농림축산 수산분야 심사경력	현재 운용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		주요경력	비고 (생년월일)
		조합수	조합명		

□ 연도별 심사인력 변동현황

구 분	심사인력수	심사인력	변동사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현재)			

※ 연도별 심사인력의 변동사항 기재, 심사인력에는 전체 심사인력 성명을 기재하고, 이직 등의 변동사항 발생시 해당 심사역 성명 및 발생일자를 변동사항에 기재

□ 투자심사인력 관리상황

- ※ 제안회사 심사인력에 대한 보수·인센티브 지급 체계 및 농업관련분야 기업 발굴을 위한 재교육 실시 현황 기재
- ※ 심사인력에 대한 보수·인센티브 지급체계는 제안회사 계정의 수익배분 제도와 제안회사가 운영중인 투자조합 계정의 수익배분 제도로 구분하여 기재

나. 전문가 활용 현황

명 칭	활동분야	주요 수행내용	주요 구성원

※ 공식화된 조직 또는 제안회사의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된 외부인력 및 외부 네트워크의 역할, 수행내용 등 기재

다. 현재 심사중인 프로젝트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분야	진행현황

4. 투자조합 운용 프로세스

- 투자/회수 의사결정구조 및 절차
- 사후관리시스템
- 리스크관리시스템
- 인센티브시스템
-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실사 방안
-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 기타 투자심사능력 제고를 위한 회사자체의 노하우

Ⅲ. 정부의 정책목표 효율적 달성을 위한 제안

- 농식품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제안회사의 차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및 투자조합의 장기발전 전략 등 제시
- 제안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 및 기존의 투자성공사례 등에 대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시
-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전략과 비전 제시

【별첨9】

PT 작성 요령

(※다음 항목들을 빠짐없이 포함하여 기재하고 총 20장 이내로 작성)

I. 운용회사 개요(20%)

- **일반현황** 회사연혁 / 주주현황(특수관계인) / 조직구성 / 재무상태(B/S,P/L) /
- **운용실적** 펀드 운용 실적(결성실적, 운용중 및 청산완료 조합 현황) / 투자실적 (조합 및 운영인력별 실적)
- **농림수산식품 기업 투자 및 지원실적**

II. 출자신청 개요(10%)

조합명 / 조합형태 / 출자분야 / 주요투자분야 / 조합결성예정액 / 운용사 출자액 / 기준수익률 / 성과보수/ 존속기간/ 관리보수 / 출자요청액 / 참여인력 / 납부방식 / 주요출자조건 신청 내용[별첨14]

III. 조합결성 및 운용계획(40%)

- **결성 계획**
 - 결성규모
 - 투자자(LP) 모집현황 : 출자확약 사항
- **운용 계획**
 - 신청조합의 투자심사인력 현황(대표펀드매니저, 일반운용인력 인적사항)
 - 투자대상 기업 발굴 방법
 - 농식품경영체 의무투자 및 우선투자 계획
 - 투자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계획
 - 자금회수 일정 및 방법

IV. 운용능력 및 프로세스(20%)

- **운용 프로세스**
투자/회수 의사결정구조 및 절차 / 사후관리 및 리스크관리 / 인센티브 시스템 / 투자대상기업 실사 방안 / 투명성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 **조합 운용 능력**
대표펀드매니저 및 운용인력의 농림수산식품산업 투자경험 /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

V. 정부의 정책목표 효율적 달성을 위한 제안(10%)

조합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및 장기발전 전략 / 신청사의 강점 및 투자성공사례 / 농림수산식품산업 투자전략

【별첨 14】

주요 출자 조건 신청서

* 공고문 상 주요 출자조건 중 운용사 제안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참고하여, 분야별 신청여부 기입

지원 분야	내용	운용사 신청확인 (여/부로 표시)
수산일반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분의 10%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수산벤처펀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분의 10%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별첨 15】

제안서 상 선정 우대 사항 내역

- * 우대사항에 해당될 경우 대상여부에 체크하고 제안서 내용에 그 제안 내역을 기입, 그리고 그 우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표시 및 기타자료 제출
- * 공고문 상 선정 우대조건 등을 참고, 분야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입

분야

선정 우대 사항	대상 여부 (여, 부로 표시)	확인 가능 자료 (페이지 기재)
신청일 기준 직전 5년 이내 수산분야 투자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ex) 별첨5 별첨6 제안서 000p
어업경영체에 전문적으로 투자(100%)하는 경우(규약 확약)		
초과결성금액 제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에정 금액을 포함하여 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출자확약서 제출)		
신주보통주에 출자예정총액의 30% 이상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규약 확약)		
정부·공공기관이 인증·확인한 수산분야 벤처, 신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이력(20억원 이상) 또는 계획(10% 이상, 규약 확약) 인정 시		